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칙

제정 2013.04.22.

개정 2018.12.01.

개정 2023.03.08.

소관부서 : 산학협력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창신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7조와 제9조의 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 하부조직과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업무의 처리) 업무가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할 부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3조(단장) ①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3.08.>

②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01.>

제4조(부단장) ①단장밑에 부단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01.>

제5조(하부조직) ①산학협력단은 정관 제7조에 따라 하부조직으로 연구사업단, 학교기업,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01.>

②각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01.>

제6조(업무) ①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01.>

1. 산학협력 업무 총괄·조정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3. 운영위원회 운영
 4.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5.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6. 산학협력 계약학과에 대한 지원사업
 7.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에 관한 업무
 8.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
 9.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11.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13.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14.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상호협력활동 및 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15. 대학의 교지 및 산업기술단지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6. 가족회사(family doctor) 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18.12.01.>
 17. 학교기업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18.12.01.>
 18. 부설연구소의운영에 관한 업무<신설 2018.12.01.>
 19.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② 제1항 각호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12.01.>

제7조 <삭제 2018.12.01.>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개정 2018.12.01.>

②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결의) 2/3이상의 참석의 과반수 이상 조건으로 결의한다.<신설 2018.12.0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부 칙

1. (제정일) 본 규칙은 2013년 4월 22일 제정한다.
2. (시행특례) 본 규칙은 1항의 제정일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년 3월 4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8.12.01.>

1.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3.0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